

「미래모빌리티 혁신역량+사업」 2025년 R&BD 기업지원 수혜기업 모집 공고

한국자동차연구원에서 천안시의 미래모빌리티 생태계 전환 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미래모빌리티 혁신역량+사업의 연구 및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2025년 3월

한국자동차연구원 원장

1 사업 개요

- (사업명) 미래모빌리티 혁신역량+사업
- (사업목적) 천안시 소재 중소·중견기업의 미래모빌리티 기술 고도화를 위한 연구과제 및 사업화 지원으로 신사업 활성화 기반 마련
- (모집대상) 천안에 소재한 미래 모빌리티 소재·부품 품목을 사업화하고 있거나, 신규아이템 사업화를 추진하는 중소·중견 기업
 - ※ 천안 지역에 본사, 공장, 지사, 연구소 등이 소재한 기업(단순 영업소 제외)
- (지원분야) 미래 모빌리티 관련 자율주행, 편의·안전, 이차전지, 디스플레이, 플랫폼 등
- (지원기간) 2025. 4. ~ 2025. 11. (8개월)
- (모집기간) 공고일 ~ 2025. 4. 7.(월) 17시까지

2 지원 내용

프로그램	미래 모빌리티 R&D 지원	사업화 지원
지원 내용	미래모빌리티 소재·부품 개발 및 사업재편을 추진하거나, 수요-협력사가 공동으로 부품개발 및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R&D 지원 *기술준비수준(TRL) 4~8단계 해당	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수혜기업 요구에 따른 전문가 지원
구분	Track 1 : 신규 R&D Track 2 : 기술고도화 R&D	기술지도, 컨설팅, 마케팅, 투자, 경영, PoC 검증

지 원 금 액	최대 6,000만원	최대 100만원
지 원 범 위	5건	10건
기업부담금	해당	해당 없음
지 원 방 식	사업비 지급	직접지원

※ 선정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라 지원금액은 조정될 수 있으며, 부가가치세는 기업부담

○ 지원 상세 내용

1) 미래 모빌리티 R&D 지원

- 미래모빌리티 소재·부품 개발 및 사업재편을 추진하거나, 수요-협력사가 공동으로 부품개발 및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R&D 지원

구분	내 용
Track 1) 신규 R&D	미래 모빌리티 관련 자유공모형 R&D 과제
Track 2) 기술고도화 R&D	1차년도 정량적 목표 우수 달성 기업의 후속 사업 연계 R&D 과제

2) 사업화 지원

- 미래모빌리티 분야 기술력 제고 및 신제품 개발 등 애로기술 해결을 희망하는 천안시 소재 중소·중견기업에게 최적의 기술개발 파트너를 찾을 수 있도록 전문가 매칭 기회 제공
- 기술지도, 컨설팅, 마케팅, 투자, 경영 등 전문가 지원
- PoC*를 실행하기 위한 시작품 제작 공간 및 연구 장비 지원

*PoC(Proof of Concep): 새로운 아이디어나 기술이 실제로 가능하고 유용한지 검증

3 신청 자격

-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사업계획서 접수 마감일 기준 천안 지역 내 법인 사업자(기업)이어야 함
-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천안 지역 내 기업, 대학, 연구기관, 연구조합, 사업자단체, 의료기관 등 「산업기술혁신촉진법」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, 「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」 제2조제1항제 3호, 제4호 및 제4의2호, 9의2부터 9의5, 제58호에 해당하는 기관

4 사업비 지원기준

-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는 지자체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로 구성
- 연구개발기관은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
- 지자체연구개발비 지원 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연구개발기관에 따라 달리 적용 가능
- 연구개발기관에서 부담하여야할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달리 적용 가능

프로그램	기업규모	지자체연구개발비 비율	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비율
미래모빌리티 R&D	중소기업	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75% 이하	해당 연구개발기관 기업부담연구개발비의 10% 이상
	중견기업	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70% 이하	해당 연구개발기관 기업부담연구개발비의 13% 이상

- ※ “연구개발기관”이란 과제수행을 위해 선정된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임
- ※ “중견기업”이란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1호의 기업임
- ※ “중소기업”이란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제1항 및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(중소기업 범위)에 따른 기업임

5 연구개발비 산정 시 유의사항

- 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 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신규채용인력은 현금으로 산정 가능
 -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
 - 신규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(2024년 10월)부터 채용한 경우에 인정
- 연구개발비 비목 중 연구재료비, 연구활동비 항목만 산정 가능
 - 본 과제는 미래모빌리티 기술 고도화를 목표로 하므로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재료비, 연구활동비 비목 이외 연구개발비(연구시설·장비비, 연구수당, 간접비 등) 산정 불가

- 연구활동비 중 연구과제추진비(국내여비, 회의비, 사무용품비, 야근식대)는 지자체연구개발비의 2%이내만 계상 가능
- 기술 개발을 위한 불가피한 사항으로 이외 항목 산정 시 전문기관과 사전 협의를 통한 조율 필요

6 진행 절차 안내

지원절차	추진방법	추진주체
공고/접수 (3.21~3.7)	· 지원사업 공고 · 관련 양식에 의거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청· 접수	신청기업 ↓ 전담기관
▼		
선정평가/결과통보 (4월 중)	· 프로그램 대면 평가 · 지원대상 선정, 사업비(지원금 확정), 선정결과 통보	선정평가 위원회
▼		
협약체결 (4월 중)	· 선정 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사전 협약체결	전담기관 ↕ 참여기업
▼		
사업수행 (협약체결일부터 ~11.30)	· 협약 프로그램 내용에 의거, 사업수행	참여기업
▼		
중간점검 (9월 중)	· 진행사항 및 진도 점검 · 프로그램 추진 애로사항 등 청취	전담기관 ↓ 참여기업
▼		
완료/결과보고 (제출일: 11.30)	· 사업수행 완료 및 결과보고서 제출	참여기업 ↓ 전담기관
▼		
완료평가/결과통보 (12월 중)	· 지원프로그램 결과보고서 완료 평가	완료평가위원회 전담기관 ↓ 참여기업
▼		
사업비 정산 (12월 중)	· 지원프로그램 수행 결과에 따른 사업비 정산	참여기업 ↓ 전담기관
▼		
사후관리 (12월~)	· 고용, 매출 등 발생 성과조사 · 수혜기업 대상 만족도 조사	참여기업 ↓ 전담기관

※ 추진절차 및 일정은 사업 사정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

○ 선정방법

- 서류검토 : 지원신청서(사업계획서)의 접수서류 및 지원조건 검토
- 선정평가 : 지원신청서(사업계획서)를 대상으로 대면 평가
- 평가위원 : 외부전문가(5명 내외)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운영
- 평가방법 : 평가위원의 종합점수 70점 이상인 기업 중 순위로 선정
- 평가내용 : 평가기준표에 의한 연구개발내용 및 연구개발비 적정성 평가

○ 평가항목

평가항목	평가 내용	배점
사업 적합성 (20)	- 기업 현황(매출액, 부채비율, 직원수, 조직, 개발역량 등) - 사업목표의 명확성 및 경영진의 혁신의지	20점
지원 필요성 (35)	- 요청사항의 시급성·필요성 - 현재 보유한 기술·역량의 미래모빌리티 적용 가능성	35점
지원 타당성 (30)	- 전환 추진시도 및 결과분석의 구체성·적정성 - 현재 애로사항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	30점
기대효과 (15)	-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의 현실성·적정성 - 기업의 성장 가능성(고용·매출증대 등)	15점
합계		100점
가점 (5)	수요자 연계 신청기업: 1점 ¹⁾	5점
	신규고용창출 인원: 1점 ²⁾	
	과제 관련 국내외 지재권 출원·등록 건수: 1점	
	과제 결과 관련 매출 발생액: 1점	
과제 결과 관련 수출 발생액: 1점		
별도평가	○지원예산 활용의 적정성 및 타당성 - 증액/적정/감액으로 나누어 평가	-

1) 수요기업 협약서 제출 시 인정

2) 채용(예정) 확인서 제출 시 인정

※ 위 평가항목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

※ 가점은 최대 5점까지 인정

○ 선정결과

- 선정 결과는 All in one service을 통해 개별공지

7 신청서 접수

○ 공고 및 접수일

지원 프로그램	신청서 접수 기간
미래 모빌리티 R&D	공고시 ~ 2025. 4. 7.(월) 17시까지
사업화 지원	공고시 ~ 예산소진시 까지(상시접수)

- 신청서 양식은 반드시 본 공고에서 제시하는 양식을 사용하여 작성
- 신청서류는 홈페이지(<https://innopolis-katech.re.kr/aiops/>) 확인 가능
(사업공고 > 천안시 사업 > 해당 공고선택 > 첨부파일 확인)

○ 제출서류

1) 공통서류

- 사업자 등록증(PDF)
- 신청기업의 최근 2년간 재무제표(2023, 2024)(PDF)

※ 일반과세자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, 창업 3년 미만 기업은 해당기간 재무제표 제출

2) 미래모빌리티 R&D

- [서식 1-1] 미래모빌리티 기술 R&D 사업계획서(hwp)
- [서식 2] 개인정보·과세정보 이용·제공 동의 및 청렴서약서(PDF)
- [서식 3] 확약서(PDF)
- [서식 4] 수요기업 확약서(PDF, 해당시)
- [서식 5] 채용(예정) 확인서(PDF, 해당시)

3) 사업화 지원

- [서식 1-2] 사업화 지원신청서(hwp)

○ 사업계획서 및 신청서 접수처

- (접수처) All in one service (<https://innopolis-katech.re.kr/aiops/>)
- (접수방법) 회원가입→사업관리→사업관리→등록하기→정보가입
→압축파일 업로드 > 확인 (온라인 접수)

○ 문의처

수행기관	담당자	전화번호	이메일
한국자동차연구원	김준석 연구원	041-559-3342	jskim2@katech.re.kr

○ 지원제외 대상

- 접수기간 내에 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서류가 허위나 거짓인 경우
-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가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
-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이 부도, 휴폐업, 국세,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,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,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(단, 희생인가 받은 기업,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법인기업은 예외)
- 부채비율이 1,000%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(단,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13조의 채권은행협의회 또는 동법 제15조의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은 예외)

○ 기타사항

- 수요기업 연계를 통한 가점 신청 시 수요기업 협약서 필요
- 과제별로 신청가능한 정부출연금의 최대범위는 공고문에 명기된 지원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
- 공고된 과제는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
- 과제에 선정된 기업은 연구원이 요청할 경우 대상 사업의 홍보, 전시, 연계 행사 개최 등에 성실하게 임하여야 함
- 제출된 각종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
-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사항에 대하여 보완요청이 있을 시 응하여야 함
- 사업 종료 후 지원분야 연계 성과(매출, 고용 등) 파악을 위한 성과 자료 제출 요청 시 성실하게 답변할 의무가 있음